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631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제1440호	백승아의원	2024.7.5.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 회부
	제4389호	김민전의원	2024.9.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
				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 회부
	제5204호	정성국의원	2024.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4.11.25.)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6.)에서 백숭아의원, 김민전의원, 정성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 로 의결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교육위원회(2024. 11. 27.)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실제로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안 제6조 및 제10조).

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 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을 "시·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관계 직원은"을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

게 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 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 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 담자가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 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 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			
관은 관계 <u>중앙행정기관</u> 등의	<u>중앙행정기관, 특별시</u>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		
	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		
	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		
	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		
	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u>다.</u>		
<u> <신 설></u>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		
	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별시·광역</u> 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 철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한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수있다.

③ · ④ (생 략)③ · ④ (현행과 같음)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⑥</u>						
시·도교육						
<u>청</u>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③ · ④ (현행과 같음)						
게 1 0 ㅈ / 하 고 포 권 미 캐 기 여 이 이 히						

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 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 다.

<신 설>

<u><</u>신 설>

② ~ ④ (생 략)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의 기능 등) ① ----------지역의 학교 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 이라 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 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 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 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업 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

<신 설>

<신 설>

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 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 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 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 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 ⑤ 제1항 및 제4항에-----

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 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 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 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을 하는 <u>관계 직원은</u>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u>⑤</u> (생 략) <u><신 설></u>

		· <u>관계</u>	직원
<u>및</u>	학교폭력	조사・상담	·자는

⑩ (현행 제5항과 같음)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

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